



미국 ‘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작업’ 주요 내용

이해랑 연구원

요약

■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진행된 ‘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작업’의 일환인 보험그룹 규제 내용 중 감독자 간 의사소통 개선과 정보 접근 및 집적에 대해서 살펴봄. 규제 개편에 따라 각주(state) 단위 및 연방의 보험감독 기관과 국제보험감독기관의 의사소통에 책임이 있는 간사역할의 주가 선정되며, 이 주는 국내·외 보험감독자들에게 보험지주회사의 재무분석정보를 제공함. 또한 규제 개편에 따라 보험감독당국의 정보 접근 및 집적 권리가 강화되어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됨. 미국 보험그룹 규제개편은 국제보험감독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그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,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■ 미국 NAIC는 지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‘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작업(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)’¹⁾ 중 보험그룹 규제 개편 이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.²⁾

- 개편 이전 보험그룹 규제는 NAIC³⁾의 「보험지주회사 모델법」⁴⁾과 재무 분석 매뉴얼이 적용됨.
 - 개편 이전 보험감독자는 기업이 보고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을 해왔으나 규제 개편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사적위험관리보고서를 제출받게 됨.
- 본고에서는 보험그룹 규제 개편 이후의 변화 중 ‘감독자 간 의사소통 강화’와 ‘감독자의 정보 접근 및 집적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.⁵⁾

1) ‘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작업’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의 국제보험감독기준을 고려하여 미국 NAIC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체계 재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과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한 작업임.
 2) NAIC(2016, 7), “CIPR Newsletter: U.S. Insurance Regulation: Group Supervision”.
 3) 미국의 보험회사감독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단위 감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각 주 보험감독관들의 모임인 NAIC가 모델법 등을 제시하고, 이를 개별 주가 채택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.
 4)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Model Laws and Regulations(IHC)이며, 이 법에 따라 제출된 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 분석 및 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보험감독자는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 및 위험 상태를 평가함.
 5) 금융위기 이후 NAIC는 보험그룹 규제 개편을 하였으며, 이 규제 개편은 그룹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보다 ‘투명한 창(clearer windows)’과 그룹 내 위험 전이를 방지할 ‘벽(walls)’을 강화하는 “Windows and Walls” 틀로 진행됨. 이 보험그룹 규제개편의 주요 고려사항은 ① 감독자 간 의사소통 강화, ② 감독자의 정보 접근 및 집적, ③ 감독협의체 구성, ④ 이행강제권 강화, ⑤ 그룹의 자본평가 등임.

■ 보험그룹 규제 개편에 따라 여러 주(State) 단위 감독당국과 연방 보험감독국, 국제보험감독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하나의 간사 주 보험감독당국이 선정되며, 이를 통해 감독자 간 소통을 개선함.

- 미국 각주의 보험감독당국 간 동의를 통해 간사 주가 선정됨.
- 선정된 간사 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지주회사 재무상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, 보험지주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정보 및 분석결과를 국내·외 보험감독기관과 공유함.
 - 선정된 간사 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지주회사의 위험평가 기준 마련, 시장 위험에 대한 주요 분석 항목 및 정기회의 논의사항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.
 - 동 감독당국은 개별 보험회사의 전략결정이 국내·외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, 보험지주회사의 현재 및 미래 위험, 감독자의 규제 관련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타 감독기관에 제공해야 함.
- 보험그룹 규제 개편에 따른 감독자 간 의사소통 개선에 대하여 NAIC는 향후 진행되는 국제금융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.

■ 보험그룹 규제개편으로 보험지주회사의 주요 정보 획득 및 집적에 대한 감독자 권한이 강화되었으며, 보험지주회사의 전사적 위험보고와 ORSA⁶⁾ 요약 등에 대한 추가적 보고 등이 의무화됨.

- 규제개편 이전 주 보험감독 당국은 「보험지주회사 모델법」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계약 내용 및 그룹 내 신규 정보 등을 보고받음.
 - 그 외의 추가적인 보험지주회사 재무정보는 NAIC의 연간 재무보고서 양식을 통해 보고받음.
- 보험그룹 규제 개편에 따라 보험지주회사가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재무상태보고 양식 중 ‘기업전사 위험보고서(Form F)’와 ‘ORSA 요약보고서’가 추가됨.
 - Form F 보고서와 기업 전사위험보고서(Form F)는 보험그룹 내에서 보험회사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회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자에게 부여함.⁷⁾
 - ORSA 요약보고를 통해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전사적위험관리를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.

■ 미국의 보험그룹 규제개편은 국제보험감독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, 보험그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 [kiRi](#)

6)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를 의미하며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의 약자임.

7) 김해식·조재린(2012), 「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」, 『KiRi Weekly』, 제179호, 보험연구원.